

#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3. 11. 29(금)

건설교통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3. 11. .

나. 제안자 : 이 재 병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13. 11. .

라. 상정일자 : 2013. 11. 29.(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건설교통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이 재 병 의원

○ 검토보고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임 현 기

○ 질의 및 토론

○ 수정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부평지역의 개발 가능한 토지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반환될 미군 부대는 18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미조성 토지로 향후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

○ 완성도 높은 부지활용 대안을 만들기 위해 민·관 협의체인 「시민참여협의회」의 기능·구성 등을 강화하여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 함.

## 나. 주요골자

- 미군부대가 존재했던 역사성과 장소성을 부각하여 시민들로부터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제명 변경
-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건에 대한 의견 청취 사항 신설
- 시민참여협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고구성 인원을 35명으로 10명 증원
- 위원 해촉에 대한 조항 신설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·관 협의체 「시민참여협의회」를 「시민참여위원회」로 변경하여 기능을 강화하고
- 「시민참여위원회」 구성인원을 25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여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인원수를 25명에서 35명으로 늘리는 사유는?(전용철 의원)  
⇒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언론 전문가, 역사 전문가가 필요하여 증원되는 것임.
- 위원회 구성에 시의원과 구의원이 함께 구성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?  
(정수영 의원)

⇒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나, 지역 대표성을 감안하여 구의원을 포함하게 된 것임

○ 시의원과 구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타 위원회의 사례가 있는지?(정수영 의원)

⇒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.

## 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없음

나. 반 대 : 이도형, 이재병, 김병철, 정수영, 이재호, 전원기, 전용철 의원

## 6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(재석위원 7, 찬성 : 7명)

※ 수정내용 :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부평구 의원은 삭제하고, 자치구 관련위원회의 대표를 신설함.

## 7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1. 수정안 1부. 끝.
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

3.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##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시의원
5. 자치구 관련위원회 대표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정안
<p>제4조(구성) ① <u>협의회</u>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<u>협의회</u>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1명과 행정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2명 이내를 호선으로 정한다.</p> <p>③ 당연직 위원은 시 <u>협의회</u>를 관련하는 국장 등과 부평구 부구청장이 되며,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시 및 부평구 의원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4. <u>부평구 반환공여구역</u> 관련 시민단체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4조(구성) ① <u>위원회</u>----- 35명 -----.</p> <p>② <u>위원회의</u> -----</p> <p>③ ----- 위 <u>원회</u>-----</p> <p>1. 시 및 부평구 의원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반환공여구역</u> -----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<u>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</u> <u>위원을 해촉</u> 할</p>	<p>제4조(구성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----- 위 <u>원회</u>-----</p> <p>1. 시 의원</p> <p>2. ~ 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5. <u>자치구 관련위원회 대표</u>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
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 
원할 때

2. 질병·출장 등으로 6  
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  
무를 수행할 수 없는  
사유가 발생한 때

3. 위원의 직무 또는 전  
문성과 관련하여 자격  
을 상실한 때

4.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 
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  
켰을 때

##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 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  
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 
운영 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캠프마켓(부평미군기지)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 
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”을 각각 “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”으로, “민  
· 관 협의체인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  
협의회”를 “인천광역시 캠프마켓(부평미군기지)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  
민참여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  
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”를 “캠프마켓(부평미군기지)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 
시민참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”로, “협의 조정한다”를 “심의 의결 한다”로 하  
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건에 대한 의견청취  
사항

제4조제1항 중 “협의회”를 “위원회”로, “25명”을 “3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 
2항 중 “협의회의”를 “위원회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

“협의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시의원

제4조제3항제4호 중 “부평구 반환공여구역”을 “반환공여구역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자치구 관련위원회 대표

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
2. 질병·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
3. 위원의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한 때

4.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

제6조제1항 중 “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”를 “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협의회”를 각각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협의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협의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협의회”를 각각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협의회”를 “위원회”로, “협의회”를 각각 “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협의회”를 각각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협의회”를 각각 “위원회”로 한다.

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<u>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만들기 위한 민·관 협의체인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3조(기능) <u>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.</u>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<u>인천광역시 캠프마켓(부평미군기지)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</u> ----- ----- <u>인천광역시 캠프마켓(부평미군기지)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3조(기능) ----- <u>캠프마켓(부평미군기지)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</u> ----- ----- <u>심의 의결한다.</u>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<신 설>

제4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1명과 행정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2명 이내를 호선으로 정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시 협의회를 관련하는 국장 등과 부평구 부구청장이 되며,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시 및 부평구 의원
2. ~ 3. (생략)
4. 부평구 반환공여구역 관련 시민단체

<신 설>

<신 설>

6.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건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-----  
----- 35명 -----  
-----.

② 위원회의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----- 위원회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시 의원
2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반환공여구역 -----  
-----

5. 자치구 관련위원회 대표

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

	<p>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</u></li> <li>2. <u>질병·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</u></li> <li>3. <u>위원의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한 때</u></li> <li>4. <u>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</u></li> </ol>
<p>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<u>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</u>의 업무를 통할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----- ----- <u>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</u>의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<u>협회의</u>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 <u>협회의</u>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7조(회의) ① ----- <u>위원회</u>의 ----- -----.</p> <p>② <u>위원회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8조(간사와 서기) ① <u>협회의</u>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</p> <p>② 간사는 <u>협회를</u> 주관하는</p>	<p>제8조(간사와 서기) ① <u>위원회의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위원회</u>-----</p>

부서의 장이 되고, 서기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, 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제9조(소위원회)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-----  
-----  
--.

③ -----  
위원회의 -----.

④ -----  
위원회의 -----  
-----.

제9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의 -----  
-----  
-- 위원회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 위원회의 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 위원회  
의 -----  
--.

제11조(운영세칙) -----  
----- 위원회의 -----  
----- 위원회의  
-----.